

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. 2. 29일 개정됨에 따라 「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」의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1조” 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6조” 로 함.
- 나. 제2조제1항 중 “영 제21조제1항” 을 “영 제26조제1항” 으로 함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영 제21조제1항”을 “영 제2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</u>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<u>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</u>의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<u>영 제21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인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<u>영 제26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)
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(이하 "주채무"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26조(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)

-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,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·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